

대한육상경기연맹 정관세칙

제4장 육상경기대회 및 참가자격

제13조(경기대회 요건) 본 연맹이 공인하는 육상경기대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.

1. 본 연맹 경기규칙에 준하여야 한다.
2. 본 연맹 공인경기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.
3. 심판원은, 보조원을 제외하고 반드시 공인심판원 이어야 한다.

제14조(경기대회 임원)전조의 경기대회에 대한 임원은, 그 경기 대회전에 본 연맹 경기규칙 및 그 경기대회의 준비위원회 요강에 의하여 위촉한다.

제15조(경기대회 참가자격) 본 연맹이 공인하는 경기대회에는,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.

1. 등록선수가 아닌 자
2. 대한육상경기연맹 선수등록 규정의 참가자격에 저촉되는 자
3. 본 연맹 또는 산하경기단체의 자격심사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경기대회 참가가 금지되어 있는 자

제16조(국제경기대회 개최)

① 국내 경기에서의 국제육상경기대회의 개최는 본 연맹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. 친선경기대회의 개최도 동일하다.

② 외국인 선수의 경기참가에 따른 교섭은 본 연맹을 통하거나, 또는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.

③ 국제대회라 함은 자국을 제외한 3개국 이상이 참가하여야 하며 로드레이스 경기는 전년도 세계랭킹 20위 이내선수 2명이상 참가하여야 하고 트랙 및 필드 단일종목별 대회는 부별 3명이상 참가하여야 한다

제17조(국제경기대회의 참가허가) 등록선수가 외국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때는, 소속 경기단체를 통하여 본 연맹의 참가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. 단, 국제육상경기연맹에 가맹된 그 나라의 통할단체가 승인한 경기대회가 아니면 본 연맹은 그 경기대회의 참가허가증을 발행하지 않는다.

제18조(선수등록규정)국내 및 국외 선수 등록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

제19조(공인심판)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공인심판원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

제20조(경기장 및 용기구규칙)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대회경기장 및 용기구 규칙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